

청주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3343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23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7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42.5㎡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성률

별지